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9
----------	----

제안년월일 : 2000. 6. 26

제안자 : 이상은의원 외 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84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건전재정 운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성과 제고를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구성위원정수 : 7명

나.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

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 총무사회위원회 3명, 도시산업위원회 4명

라. 활동기간 : 2000. 7. 8일부터 2000. 7. 14일까지 ▷ 7일간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